『陶藝研究』 간행 규정

제1조 (목적)

본 규정은 이화여자대학교 도예연구소에서 발간하는 『陶藝研究』의 간행에 관한 사항을 정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간행일자)

학술지의 간행은 매년 1회로 하며, 발행일은 12월 10일로 한다.

제3조 (논문투고)

- 가. 학술지에는 도자예술, 도자사, 도예평론, 도자문화사 등 다방면의 도예 관련 연구 논문 이외에도 서평, 전시평, 보고서, 자료집, 연구 및 분석사례 등을 수록할 수 있다. 다만 요업공학(예, 요업원료학) 논문은 배제한다.
- 나. 논문의 투고 자격은 석사학위 이상, 혹은 그에 준하는 자격을 갖춘 국내외의 연구자 및 해당분야 학술 전문가를 원칙으로 한다.
- 다. 본 학술지는 교신저자의 참여를 제한하며, 공동저술일 경우에는(제1저자, 제2저자 등) 논문투고신청서와 더불어 공동투고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공동저술은 합당한 사유가 인정될 경우에만 투고할 수 있다.(공동저술의 예: 방대한 리서치연구, 데이터실험연구, 발굴조사연구, 아카이브 수집연구, 등)
- 라. 본 학술지에 투고하는 논문은 국내외 학술지, 잡지 등에 발표되지 않은 글이어야 한다.
- 마. 예외적으로 해외에서 발간된 논문의 경우, 학술적 기여도와 중요성이 인정되면 편집위원 회의 의결에 따라 번역 후 게재할 수 있으나, 이 경우 해당 글에 대한 출판사항을 반드시 각 주 1에 명기하고 투고방식은 학술지의 「논문투고규정」에 준수하여 작성한다.
- 바. 논문 투고자는 논문제출 2개월 전인 6월20일까지 논문투고신청서와 국문초록을 제출하고, 8월20일까지 윤리서약서, 윤리자가진단서, 저작권이양동의서, 카피킬러 표절률확인서, 심사논문 일체(국문, 영문초록 포함)를 도예연구소 홈페이지의 논문투고관리시스템을 통해 제출해야한다.
- 사. 투고 논문의 작성 및 제출방식에 관한 사항은 「논문투고규정」에서 정한다.

아. 게재료는 「논문투고규정」에서 정한다.

제4조 (편집위원회의 구성과 역할)

- 가. 학회지 간행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편집위원회를 둔다.
- 나. 편집위원회는 편집위원장과 국내외 편집위원 10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다. 편집위원장은 본 연구소의 소장 혹은 본교 학술담당 전임교수로 한다.
- 라. 편집위원은 학문적 업적과 경력, 전문성 등을 고려하여 편집위원회 업무수행에 적합하다고 판단되는 자를 선임한다.
- 마.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의 임기는 2년을 원칙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 바. 편집위원회의 실무를 위해 편집간사 및 연구원을 둔다.

제5조 (편집위원회의 운영)

- 가. 편집위원장과 편집위원회는 『陶藝研究』 발간을 위한 회의, 심사, 자문, 논문 모집, 심사 및 게재 여부, 편집, 간행, 심사위원 위촉 등에 대한 전반적인 사항을 심의 결정한다.
- 나. 편집위원회 소집은 연구소 소장과 편집위원장의 명의로 하며, 매년 1회 이상 개최한다. 편집위원장은 적합한 사유에 따라 임시위원회를 해당 위원에 한해 소집할 수 있다.
- 다. 편집위원회의 의결은 편집위원 1/2 이상의 출석과 출석 위원 2/3 이상의 찬성으로 한다. 다만 참석이 어려운 편집위원은 위임장으로 대신할 수 있다.
- 라. 편집간사 및 연구원은 편집위원회 회의록을 작성하고 이를 편집위원에게 보고한다. 편집 회의결과보고서는 회의 종료 1주일 이내 각 편집위원들에게 이메일로 송부한다.

제6조 (논문심사)

- **가.** 투고된 논문에 대하여 편집위원회는 연구 분야, 형식, 분량 등의 적합성 여부를 검토하는 1차 심사를 시행한다.
- 나.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내용의 학문적 수준을 종합적으로 평가하는 2차 심사를

시행한다.

다. 2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한해 학술지에 게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예외적으로 본 연구소의 기획, 지원 사업 등과 관련한 논문의 경우 편집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심사과정을 생략할 수 있다.

라. 논문 이외 서평, 전시평, 보고서, 자료집, 연구 및 분석사례 등은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심사를 제외한다. 다만 서평을 제외한 다른 글들은 논문의 형식으로 구성되어야 한다.

제7조 (심사절차)

- 가. 게재될 논문은 간행 4개월 이전 시점인 8월20일에 취합하여 심사한다.
- 나. 자유 투고자는 논문 마감일까지 논문 원고를 논문투고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하고 심사료 60,000원을 본 연구소 은행계좌로 온라인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위촉 및 청탁 투고자는 심사료를 받지 않는다.
- 다. 1차 심사에서 탈락한 경우는 심사료를 반환한다.
- 라. 1차 심사를 통과한 논문에 대하여 2차 심사를 시행하고 심사위원을 각 논문 당 3명씩 선정한다.
- 마. 심사위원은 해당분야에 적합한 전문가를 위촉한다. 다만 해당 논문의 지도교수는 심사위 원에서 배제한다.
- 바. 심사위원에게 심사의뢰에 관한 내용을 최소 1주일 전에 전화, 메일 등을 통해 전달하며, 심사위원은 연구소에서 지정한 날짜와 양식에 의거한 논문심사서약서와 논문심사의견서를 논 문투고관리시스템에 업로드한다.
- 사. 투고자 및 심사위원에 관한 정보는 반드시 비공개로 진행한다.
- 아. 심사위원에게는 심사완료 후 심사비(재심사 포함)를 지급한다.

제8조 (심사기준)

가. 1차 심사는 투고된 논문이 본 연구소의 학술 목적과 발간 취지에 부합하는 분야를 다루고 있는지에 대한 여부, 투고 지침에 의거한 형식 및 분량을 준수하였는지에 대한 적합성 여부를 기준으로 한다.

- 나. 2차 심사는 투고된 논문을 다음과 같은 기준에서 총체적으로 평가한다.
 - ① 새로운 논제와 자료의 발굴
 - ② 논리적이고 일관성 있는 논문 구성과 논점을 제시
 - ③ 참조문헌, 인용문, 이미지 자료에 대한 성실한 제시
 - ④ 관련 학계의 기여도와 후속 연구의 제시
- 다. 2차 심사는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의 4등급으로 판정한다.
- 라. 3인의 2차 심사위원이 판정한 심사결과는 아래 표를 참조한다.
- 마. '수정후재심' 판정의 경우 동일한 심사위원 1-2명이 수정된 논문을 재심한다. 다만 심사위원의 요청에 따라 재심이 거부될 수 있다. 이 경우 편집위원회에서 새로운 심사위원을 위촉하여 심사한다. 재심의 경우 게재가와 게재불가 의 2등급으로 판정한다.

- 2차심사 판정표 -

유형	제1심사위원	제2심사위원	제3심사위원	결과 및 조치
1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게재가
2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3	게재가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4	게재가	게재가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5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6	게재가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7	게재가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8	게재가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9	게재가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10	게재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1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12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게재
13	수정후게재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수정후게재
14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15	수정후게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수정후재심
16	수정후게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17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18	수정후재심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19	수정후재심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20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게재불가

- 바. 수정 요구를 받은 투고자는 성실하게 수정에 임하며, 수정 요구에 이의 제기가 있을 때는 구체적이면서 설득력 있는 반론을 문서로 작성하여 제시해야 한다.
- 사. 편집위원회는 1, 2차 심사 결과를 토대로 논문의 게재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 아. 최종 게재가 확정된 논문이라 하더라도 연구소 사정에 따라 이월 게재할 수 있다.

제9조 (저작권)

- 가. 학술지 게재 논문에 대한 일체의 저작권은 본 연구소에 귀속된다.
- 나. 다만 도판의 저작권에 대한 책임은 전적으로 저자에게 있다.
- 다. 본 규정에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관례를 따른다.

제10조 (윤리위원회의 운영)

- 가. 연구소는 논문의 투고 및 심사에 관한 정당성과 투명성을 위해 윤리위원회를 조직한다.
- 나. 윤리위원회는 윤리위원장을 비롯해 윤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다. 윤리위원은 학술적 심의평가에 적극 참여한다.
- 다. 윤리위원의 1명 이상은 본 연구소 소속 이외의 위원을 반드시 위촉한다.
- 라. 윤리위원회는 연중 6월에 총회를 개최하며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임시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라. 윤리위원은 연구소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11조 (연구위원회의 운영)

- 가. 연구소는 원활한 학술연구와 학술행사, 학술지 편집 및 기획, 출판 등을 추진하기 위해 연구위원회를 운영한다.
- 나. 연구위원회는 연구위원장을 비롯해 연구위원 5인 이상으로 구성한다.
- 다. 연구위원은 본 연구소에서 추진하는 학술 관련 사업 및 행사에 적극적으로 협력한다.

- 라. 연구위원회는 춘, 추계 총회를 개최하고 위원장의 요구에 따라 임시 회의를 수시 개최할 수 있다.
- 마. 연구위원은 연구소 소장이 위촉하며 임기는 1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 바. 연구위원은 해당 학술분야에 박사 수료 이상의 신진 연구자를 임명하지만, 석사급 이상 연구자 가운데 탁월한 학술 및 업무 수행능력이 있다고 판단되면 예외적으로 임명할 수 있다.

부칙

제1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4년 9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2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7년 6월 1일부터 발효한다.

제3조(규정설정) 본 규정은 도예연구소에서 의결된 내용으로 모든 사항은 그 효력이 인정된다.

제4조(시행일자) 본 규정은 2018년 11월 1일부터 발효한다.